

#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칙

[시행 2022. 11. 28.],[2026. 2. 10. 일부개정]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학교규칙(이하 '학칙')은 교육기본법(이하 '기본법'), 초·중등교육법(이하 '교육법') 및 동법시행령(이하 '시행령'), 대안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(이하 '대안법')에 의거 장대현중고등학교(이하 '본교')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육목표)** 본교는 북한배경학생(북한이탈청소년, 제3국출생, 국내출생)에게 중등교육(중고등학교 과정) 및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함을 교육목표로 한다.<개정 2026.2.10.>

**제3조(명칭)** 본교는 장대현중고등학교(영문 Jangdaehyun Middle & High School)라 칭한다.

**제4조(위치)** 본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사로 76번길 71(신호동)에 둔다.<개정 2026.2.10.>

## 제2장 수업연한·학년·학기 및 휴업일

**제5조(수업연한)** 본교는 수업연한을 통합과정 6년(중등과정 3년, 고등과정 3년)으로 한다.

**제6조(학년 및 학기)**

- ① 본교의 학년은 중등과정 3년, 고등과정 3년으로 운영한다.
- ② 학년은 필요에 따라 학교장은 무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③ 학년도는 2개 학기로 나누며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7조(휴업일)**

-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관공서의 공휴일
  - 나. 개교기념일
  - 다. 여름방학
  - 라. 겨울방학
  - 마. 학기말 휴업
  - 바. 정기 귀가일
- ② 휴가일,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③ 각호 외의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휴업을 할 수 있다.
-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각 호 외에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.

##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

### 제8조(학급수)

- ① 본교의 학급수는 남녀 공학으로 전 학급을 4학급으로 하되, 학생 모집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6.2.10.>
- ② 본교의 중·고등학교 과정은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며, 학급 편성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.<신설 2026.2.10.>

### 제9조(학생정원)

-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총 20명으로 한다(단, 5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).<개정 2026.2.10.>
- ②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5명 내외로 편성하되,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<신설 2026.2.10.>
- ③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정원은 통합정원제로 운영하며, 정원(20명) 이내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정원을 학교장이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.<신설 2026.2.10.>
- ④ 한 학년의 학생 정원수는 학교운영을 고려해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.

## 제4장 교육과정, 교과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

### 제10조(교육과정)

- ①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육법 제23조 및 대안법 제9조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을 참고로 하여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.
- ② 북한이탈청소년의 생애주기와 남한사회 적응 정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교육과정 계획 및 일정을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편성 운영한다.

### 제11조(교과·수업일수)

- ① 교육과정은 교과(군)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.
- ② 교과는 보통 교과와 대안(교양) 교과로 한다.
- ③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과(군)는 국어, 사회(역사 포함)/도덕, 수학, 과학/기술·가정/정보, 체육, 예술(음악/미술), 영어, 대안(교양)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대안 선택과목 편성으로 한다.
- ④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(군)는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편성하며 공통 과목은 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통합사회, 통합과학(과학탐구실험 포함), 기술·가정, 대안(교양)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대안 선택과목 편성으로 한다.
- 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, 동아리활동, 봉사활동, 진로활동으로 한다(국가교육과정 개정 및 변경에 따라 활동 명칭은 변경될 수 있다).<개정 2026.2.10.>
- ⑥ 수업일수는 대안법 제8조에 의거해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.

### 제12조(교외체험학습)

-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(교외)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.
- ② 학교장은 친·인척 방문, 고적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, 도·농간 체험학습 등의 (교

외)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(교외)체험학습 신청서와 계획서를 받아 심사한 후 (교외)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은 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(교외)체험학습의 기간 및 횟수는 7일 전 신청하여 연간 최고 15일까지 허용하며, 학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은 취소될 수 있다.<개정 2026.2.10.>

### 제13조(고사·학업성적평가)

- ①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정기고사를 학기별로 실시한다.
- ② 각 교과와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③ 본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5장 입학.재입학.편입학.전학.휴학.퇴학.수료.졸업 및 그 절차

### 제14조(입학)

-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등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, 고등과정은 중등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면접에 참여하여야 하며, 자체 기준에 의거 입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15조(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) 본교의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시기는 다음과 같다.

#### ① 입학전형

가. 서류전형(80점): 학업계획서, 학력확인서, 성적 자료 등 선발에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, 입학전형위원(또는 입학전형위원회로 구성할 수도 있음)이 심의하여 입학 예정자를 선발한다.<개정 2026.2.10.>

나. 면접전형(20점): 본교 입학전형위원(교직원 중 학교장이 지정한 3인 이내)이 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합산한다. 면접은 수학 능력 및 학교생활 적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, 입학전형위원의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서류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.<개정 2026.2.10.>

다. 점수합산처리: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. 제출한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 하다고 확인될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

#### ② 학생 선발시기

가. 정시선발 : 전기학교의 특성화고 일반전형 기준에 준용하여 선발 모집 공고, 면접실시, 최종 선발.

나. 수시선발 : 취학, 전학, 재입학,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

제16조(재입학)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

가 할 수 있다.

**제17조(편입학)** 본교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**제18조(전학)** 본교에 전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**제19조(휴학 및 복학)**

-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.
-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.
- ③ 복학 시에는 복학일 1주일 전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.
- ⑤ 휴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휴학 만료일 1주일 전 휴학 연장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 복학신청서나 휴학 연장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한다.

**제20조(자퇴)** 스스로 자퇴(타교 전학을 포함)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써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.

**제21조(퇴학)**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퇴학을 명할 수 있다. 단, 교육법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의무교육대상자(중등과정)는 퇴학하지 아니한다.

-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결석이 잦은 자
- ③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

**제22조(수료 및 졸업)**

-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육과정의 이수정도, 출석일수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.
-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 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 단, 편입학생의 경우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-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
##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

**제23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)**

-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인정과 환원 조치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내부규정에 따른다.
- ②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, 심신 발달과 건강 상태,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.
- ③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업무의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기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를 둔다.
- ④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30일 이내에 환원조치 할 수 있다.

## 제7장 수업료.입학금.기타비용의 징수.장학금

**제24조(수업료.입학금)**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부산광역시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본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.

**제25조(수업료 감면 등)**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.

**제26조(기타비용의 징수 등)** 수익자부담경비(급식비, 현장학습비, 기숙사비 등)와 같이 교육 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.

**제27조(장학금)** 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방정한 자, 혹은 가정사정이 극심하게 어려워 학업이 지속되기 힘든 학생의 경우,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8장 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

### 제28조(교원의 자격)

- ① 본교 교장은 본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, 대안학교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격적이며, 통일교육전문가로서 이사회가 임명한 자로 한다.
- ② 교감은 교사 가운데서 학사업무행정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자를 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임명한 자로 한다.
- ③ 교사는 정교사(1급·2급), 기간제교사(임시계약직)로 구분하며 교육법(별표 2)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, 본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겨 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임명한 자로 한다.

### 제29조(교원의 임무)

-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도·감독하며, 학생을 교육한다.
-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,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교감이 부재 시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.
-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 제30조(교원의 임용 기준)

- ① 본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본교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.
  - 가. 본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한 심신간의 자질을 갖추고 본교의 교육이념과 학교운영 방침을 수용하는 자
  - 나.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교원자격증 및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
  - 다. 특성화 교과, 치료교과 및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전담교사 및 전문교사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원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
- ② 교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기간제(계

약제)교사, 강사, 원어민교사 등은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엄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.

- ③ 교원의 정원 관리는 관할청의 지침에 따르되,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상 별도로 필요한 원어민 교사 및 강사와 기타직원(사감, 조리사, 관리인, 사무원 등)은 학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**제31조(교원의 연수 및 포상)**

- ① 교원의 자질과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.
- ②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0년 단위별로 장기근속 모범교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**제32조(교원의 면직)** 교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,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결의로 면직될 수 있다.

- ① 교육 공무원법에 준하여 위반되는 경우
- ② 학교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
- ③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

##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

**제33조(학생 포상)**

-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, 학업이 우수한 자, 근면성이 뛰어난 자,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② 학생 포상의 종류,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4조(징계)**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.

- ① 학교 내의 봉사
- ② 사회봉사
- ③ 특별교육이수
- ④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- ⑤ 퇴학처분(의무교육과정제외)

**제35조(퇴학처분)**

- ① 본 학칙 제21조(퇴학)에 의거,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,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에서 최종 퇴학 조치된 자는 부산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**제36조(상벌규정)**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7조(학생생활교육위원회)**<개정 2026.2.10.>

- ① 본교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.  
<개정 2026.2.10.>
-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, 필요시 외부인사(학부모 등)를 포함하여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(단, 학교의 실정에 따라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).  
<개정 2026.2.10.>
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 제10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
### 제38조(학생자치활동)

-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회를 둔다.
- ② 학교장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 자치회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.

## 제11장 기숙사 운영

### 제39조(기숙사 입사)

- ① 본교는 기숙형 전일제 학교로써 기숙사를 운영한다.
- ② 본교 입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원이 기숙사에 입사해야 하며,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- ④ 사정상 기숙사 입사가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통학도 허용할 수 있다.

## 제12장 학칙 개정

### 제40조(학칙개정)

- ①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상위법의 개정과 학교장이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교직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해 개정한다.
- ② 발의된 조항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의견수렴 및 교무회의에서의 축조심의를 통하여 자구수정 후 최종안을 작성한다.
- ③ 작성된 최종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확정한다.

<개정 2026.2.10.>

- ④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가. 학생 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
  - 나.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세칙)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 <2026. 2. 10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